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 .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됨에 따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향교재산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과세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1,000분의 3으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으로 축소하여 도세감면조례상의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규모 일치로 형평을 도모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3호)

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시한을 5년으로 정하여 타 감면사항과 형평을 기함.(안 제12조의2)

라. 사권제한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종전보다 확대 규정함.(안 제18조)

마.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바.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파주시시세의”로 한다.

제2조 제목중 “유족에”를 “유족 등에”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로 하고 단서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하며 동조 제1항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로 하고 단서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

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제목과 본문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본문 단서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점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 “2세대 이상을”을 “국내에 2세대 이상을”로 단서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85제곱미터이하”를 “60제곱미터이하”로 하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의2중 “1,000분의 3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4조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대한 재산세는”을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0조중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를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1조중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로 한다.

제23조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4조중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를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로 “그 고유업무에”를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로 “동 사업회”를 “그 사업회”로 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

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4조의4(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
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
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 940-4220
	시 세 담 당	이 용 석 ☎ 940-4238
	담 당 자	정 재 현 ☎ 940-423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익상 기</u> <u>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u> <u>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u> <u>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u> <u>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u> <u>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u> <u>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지방세법 제7</u> <u>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u> <u>타 사유로 인하여 파주시시세의</u> ----- ----- ----- -----.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u>유족에</u> 대한 감면) ②국가유공자등에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 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 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 유공자의 직계비속의 <u>배우자</u> 또 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 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u>유족 등</u> 에 대한 감면) ②----- ----- ----- ----- ----- ----- ----- <u>배우자</u> , ----- ----- ----- -----

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 4.(생략)	2. ~ 4.(현행과 같음)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삭 제>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험료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배우자,----- ----- ----- ----- ----- ----- ----- ----- -----

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
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
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
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
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 4.(생략)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다만, 보철용 또는
 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
 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
 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 4.(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 3.(생략)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 7.(생략)

<신설>

제8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 3.(현행과 같음)

4.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5. ~ 7.(현행과 같음)

제10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

	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	-----
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	-----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
 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
 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
 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
 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
 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보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재산
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

1. -----
 -----보

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
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
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
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
을 포함한다)에-----

2. ----- 60제곱미터이하 -----

3. -----60제곱미터이하-----

제12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세
산세 감면) -----

당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
에 대한 감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현행과 같음)

②-----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5년간-----

③

-----당해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농업소득세-----

<삭 제>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정감한다.

<신 설>

동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정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정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정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

1.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

2.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
세기준인 현재 동법 제17조제1
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
무에 -----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당

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
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
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
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신 설>

<신 설>

-----.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에-----

-----그 사업회에-----

-----.

제24조의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
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
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4조의4(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
--	--